

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

심사보고서

2025. 11. 2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징수과장 장혜경】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 또는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여야 하고,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이 동의안을 제출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출연대상: 한국지방세연구원
 - 2) 출연의 필요성
 -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
 -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<한국지방세연구원>에 법정 출연금 출연
 - 3) 출연금: 17,059천 원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권하나)

- 본 동의안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¹⁾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”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는 지방세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·조사·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.
- 2026년도 출연금은 전전년도(2024회계연도) 보통세 세입 결산액 170,590,903천 원에 1만분의 1.0(0.01%)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17,059천 원임. 이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(적립비율 1만분의 1.2 → 1.0 조정)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임.
※ 입법예고 기간: 2025.11.5. ~ 12.15.
- 다만,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,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에 있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현행 시행령 비율(1만분의 1.2)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. 그러나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사전 통보(「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통보 및 출연금 산정 협조」, 서울시 세제과-10977, 2025.7.9.)²⁾에 따라, 2026년도 예산 편성 기준으로 개정 예정 비율(1.0)을 적용하여 출연금을 산정한 것임.

1)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별임1 참고

- 또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은 출연금 산정액과 실제 출연액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, 다음 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이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개정 예정 비율을 사전 적용한 후 개정 여부에 따라 차액을 조정하는 방식도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음. 다만, 이는 개정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향후 대통령령 개정 동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바, 본 출연계획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출연 목적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으로, 지방세 제도 연구보고서 발간, 지방세 포럼 운영, 지방공무원 교육, 지방세 법령해석 및 세정 자문 등 지방세정 전반을 지원하고 있어 정책적 효과성 또한 충분하다고 사료 됨.

< 참고: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요 >

- 설립일자 : 2011. 2. 28.
- 설립근거 : 지방세기본법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
- 위치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
- 기구 : 5실 4센터 5부
- 조직 및 인원 : 87명(연구위원, 관리직 등)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□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개요

-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부를 출연해야 함

< 출연의 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>

- (제152조 제1항)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함
- (제152조 제3항)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

□ 출연절차

① 자치단체별 출연금 예산편성

- 전전년도(24년) 보통세*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0**('지방세기본법 시행령' 제94조)

*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조의2에 따른 시·군·구세인 지방소비세는 보통세에 포함

** 연구원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출연비율 인하($1.2 \rightarrow 1.0$) / 하반기 시행령 개정 예정

-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출연하여야 할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
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산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(시행령 §94⑤)

※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출연을 위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, 예산안에 편성

< '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>

○ 편성목 : 306 출연금

1.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

-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, 한국지역진흥재단, 한국지방세 연구원,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

② 자치단체 출연

- 각 자치단체에서는 출연금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붙임 서식에 의하여 제출
-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회계연도 출연금 요구서를 당해연도 '25.12.24.까지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시·도 통보*
 - * 지방세연구원 정관 제27조에 따라, 출연금 요구서, 사업계획서, 다음 회계연도 추정 대차대조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송부 예정
- 시·도에서는 '25.12.31.까지 시·군·구에 통보
- 각 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'26.3.31.까지 납부

③ 출연금 정산

- 직전년도 결산액보다 과소하게 편성·출연한 경우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에 정산액만큼 추가 편성
- 출연예산이 직전년도 결산액보다 과다하게 편성·출연한 경우, 지방세연구원에서 매년 7월말까지 환급

□ 자치단체 협조사항

- (시·도 및 시·군·구)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(붙임1)에 따라 출연금 예산 편성, 통보, 정산 등 관련 절차를 원활히 이행
- (시·도) ① '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(붙임1)을 각 시·군·구에 전파 ② 시·도별 출연금 산정내역(붙임2)을 취합하여 '25.7.18.(금)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로 공문제출

※ 기타 문의사항은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또는 지방세연구원(02-2071-2726)으로 문의

「지방세기본법」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※ '25년도말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정 출연율 인하 예정 (현행)1만분의 1.2 → (개정)1만분의 1.0